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관광 동향 및 환경 등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행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시설면적, 건축연면적 등 면적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명칭 변경 등 단순변경사항을 ‘조성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2조)

- 1)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동향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5년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토록 함.

나.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적용범위 확대(안 제47조제1항)

- 1) 조성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성명·소재지 주소 등 단순 변경
- 2)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 간 변경

다.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및 검토 기준 마련(안 제47조의2)

- 1) 관광진흥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잔여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2) 상기 매수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야할 사항 및 수수료 청구 근거 등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없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간 변경에 한정한다). 다만, 제3호의 본문에 따른 기준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한다.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명칭 변경(단순 명칭 변경에 한정한다)

6.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양수, 분할, 합병,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사유지 매수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수 요청 필요성과 시급성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성실한 협의 이행 여부
3. 토지소유자와 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u>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u>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 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간 변경에 한정한다).</u> 다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3호의 본문에 따른 기준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한다.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
사업의 명칭 변경(단순 명칭
변경에 한정한다)

6.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
양수, 분할, 합병,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사유지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사유지
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수 요청 필요성과 시급성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성실한 협의이행 여부
3. 토지소유자와 정상적인 협의

<u>제47조의2</u> (생략)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u>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u>제47조의3</u> (현행 제47조의2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연 락 처	(02) 203 - 2892